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

경기도 최초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연구 및 추진보고 - 학습동아리 ‘학교시설 공유제 연구모임’ -



2022. 1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 목 차 >

1.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연구	1
I. 연구개요	1
II. 추진현황	2
III. 기타사항	6
IV. 붙임자료(업무협약서)	8
2.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홍보자료	10
I. 사업대상	10
II. 인센티브 지원방향	11
III. 문제점 보완방향	12
IV. 참고자료(강좌공문)	13
V. 참고자료(홍보포스터)	15
[붙임]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관련 규정	16
I. (발체)공유제 관련 규정	16
II.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17
III.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9
IV.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20

1.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연구

-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학교시설 개방의 인센티브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 학교시설의 개방차원이 접근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시간·공간에 대한 시설공유로 생활체육시설, 시민 편의시설 확충

■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연구개요

- 학교시설 중 시민들과 공유가 필요한 주차장·체육관 등 시설에 대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대별 운영주체를 달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정책
- 시설의 관리책임은 시간대별 운영주체가 부담
- 대상시설 및 공유사업

구분	㉠ 체육관	㉡ 주차장	㉢ 유휴교실 등
대상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단독주택 인접학교로 20면 이상 주차구획 시설	1개층 이상 규모로 동선분리가 가능한 공간
운영,관리	매니저(강사,관리) 파견 고양시(체육정책과)	고양시(주차교통과)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운영부서 협의
공유시간	학교 방과후~주말	18:00 ~ 익일 08:00	시설규모에 따라 협의
공유사업	시민 생활체육시설	학교주변 거주자 주차장	평생학습 공간
협약기간	5년 단위	5년 단위	5년 단위

○ 진행 프로세스



■ 2022년 추진현황

①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학교 모집

○ 규 모 : 15개 내외 학교

- 체육관, 주차장 10개 내외(2022년 추진)
- 유희교실 등 : 시설규모에 따라 단계별 추진

○ 기 간 : 2021.9.10.(금) ~ 9.24(금)

○ 대상시설 및 운영계획

① 체육관

- 신청대상 : 체육관 , 강당겸용 체육관

※ 별도건물이 아니더라도 동선 분리가 가능할 경우 신청대상

- 운영계획 : 관리매니저 파견 형태(강습+프로그램운영+시설관리)

- 운영시간 : 평일 방과 후, 토·공휴일 오전 오후

- 운영주체 : 고양시

- 관리책임 : 고양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매니저 상주)

※ 학교시설공유제 참여 협약 체결 후 운영자 결정 후 운영협약에 책임소재 명기

③ 주차장

- 신청대상 : 단독주택에 인접한 학교로 야간에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20면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
- 운영계획 : 주차교통과 운영
 - 학교 관제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사업 지원(2억원 이내)
 - 민원처리 및 불편사항 : 고양시 직접관리
 - 선정학교는 경찰서에서 탄력순찰로 지정하여 야간순찰 관리

④ 기타 유희공간

- 신청대상 : 1개층 이상의 규모로 리모델링으로 동선 분리가 가능한 시설
- 운영계획 : 시설규모에 따라 협의 결정
 - 리모델링 비용 전액 지원(용도 결정 후 학교와 협의로 공사주체 결정)
 - 학교 학부모들의 평생학습공간 등 우선 선정 예정

② 참여학교 인센티브

【1】협약기간 내 매년 지원

- 학교시설 공유에 따른 인센티브 【평생교육과】

사 업 명	사업비	학교당 지원액	비고
계	2.5억원		
①개방실적 우수교 지원	1억원	학교당 2백~5백	개방실적에 따른 차등지급
②학교시설공유제 참여교	1.5억원	1천만원×15개교	공유시설 1개소당 1천만원

※ 해당부서와 시설 운영협약이 체결된 당해연도부터 협약기간(5년) 동안 지급

● 시설별 사용료 및 보상금

- 체육관 : 시설사용료 연360만원 (30만원×12월) 【체육정책과 운영비 포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의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에 따르며, 학교별 개방일수 및 개방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 주차장 : 20면 기준 연720만원 (3만원×20면×12월) 【주차교통과 사업비】

※ 주차장 사용면수, 이용률에 따라 차등적용

● 연간 학교 인센티브 예시 (5년간 매년지급)

항목	주차장 공유 (20면기준)	체육관 공유	주차장&체육관 동시 공유
계	약20,000천 원	약17,000천 원	약35,000천 원
인센티브	10,000천 원	10,000천 원	20,000천 원
사용료		3,600천 원	3,600천 원
보상금	최대7,200천 원		최대7,200천 원
개방실적 우수교지원	3,000천 원~5,000천 원	3,000천 원~5,000천 원	3,000천 원~5,000천 원

【2】2022년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가산점 부여를 통한 우선선정

※ 5년 단위 협약체결로 협약기간 내 각 사업당 1회 사업 선정 인센티브 부여

항 목	학교시설 개선사업 선정 가산점 부여 사업			비 고
	① 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	② 소규모 개선사업	③ 공간혁신사업	
선정주체	고양교육청, 고양시	고양교육청	고양시	
지원기준	5천만원~12억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상당	
지양사업	장기지원사업, 일몰사업 등	정보화기기, 교재교구	자산취득성 경비	
22년 예정사업비	고양시 50억, 교육청 50억	교육청	고양시 7억	
선정시기	21. 10월	22.3월	22. 4월	

①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5978(2021.7.5.)참고

☞ 2022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사업 추진

②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503(2021.03.11.)호 참고

③ 공간혁신사업 : 고양시 평생교육과-2675(21.2.26)호 참고

【3】공유시설의 선정

○ 선정기준

- 공유시설별로 각 사업부서의 지역적 필요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정

○ 선정기한 : 2021. 10. 8.까지

○ 선정방법 : 현장실사 후 사업부서 선정

- 체육관 : 체육정책과

※ 시설접근 동선,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유무 등을 감안 선정

- 주차장 : 주차교통과

※ 「고양시 주차장 공유심의위원회」에 안전상정 후 결정

- 기타유휴시설 : 평생교육과

④ 인센티브 확정 및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체결

○ 인센티브 협의

- 기관 : 고양시(평생교육과), 고양교육지원청
- 내용 : 선정학교의 인센티브 【2】 가산점 반영 협의

○ 2022년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체결

- 기간 : 2021. 11월
- 주체 :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학교
- 협약기간 : 5년
 - 체육관 : 2021. 11월 공유제 협약체결 후 세부 운영협약 별도진행
 - 주차장 : 주차장공유제 협약으로 진행
 - 기타 유휴공간 :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후 별도진행

■ 기타사항

① 부서별 역할분담

- 평생교육과 : 학교시설 공유제 총괄 추진, 정책홍보
- 체육정책과 : 체육시설 선정, 체육시설 운영(운영비, 운영협약 등)
- 주차교통과 : 주차시설 선정, 주차공유제 추진
- 고양교육지원청 : 학교홍보, 인센티브 협의

② 추진일정

- | | | |
|----------------------|-------|------------|
| ○ 추진계획 수립 | | 2021.9.10. |
| ○ 참여학교 모집 | | 2021.9.30. |
| ○ 학교 선정 | | 2021.10.8. |
| ○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상정 | | 2021.10말 |
| ○ 2022년 본예산 반영 | | 2021.9.10. |
| ○ 2022년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식 | | 2021.11월 |

3 2022년 본예산 사업비 편성 협조

○ 평생교육과

- 공유제 참여학교 인센티브 예산 : 약 2억원

○ 체육정책과

- 학교체육관 운영비

○ 주차교통과

- 학교주차장 설치비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업무협약서

(공유시설 : 학교체육관)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 고양시 관내 공유 참여교(이하 ‘학교’ 라 한다), 고양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라 한다.)는 학교 체육관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데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관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데 있어 협약기관 간 협력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유시설의 종류 및 시간)

- ① 공유시설은 학교의 체육관으로 한다.
- ② 공유시간은 평일 방과 후 시간 및 토·일요일로 하되 구체적인 시간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이행사항) ‘시’, ‘교육지원청’, ‘학교’, ‘시체육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① ‘시’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약기간 동안 공유시설의 운영비 마련
- 협약기간 동안 해당 학교 인센티브 지급
- 학교시설 공유제 정착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② ‘학교’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관 공유와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활한 학교체육관 시설공유를 위하여 ‘시’, ‘시체육회’와 협력하여 필요시 참여학교에 대한 행정적 사항 등을 지원한다.
- 필요시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 학교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한다.

④ ‘시체육회’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 마련 시행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학교 체육관 공유에 따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비용부담
- 학교 체육관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철저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대책 마련 및 대응

제4조(시설사용허가) ‘학교’와 ‘시체육회’는 체육관 운영계획 수립 후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관 공유 실시 전에 시설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협약서의 효력 등)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2026년 12월)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갱신 및 변경·폐지할 수 있고,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 의견이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다.
- ② 이 협약서는 ‘시’, ‘교육지원청’, ‘학교’, ‘시체육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각 협약주체는 시설공유와 관련된 협약내용을 변경·조정 요청할 수 있으나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다른 협약주체들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일

고양시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 교장	고양시체육회 회장
이재준 _____	서동연 _____	_____	_____

2.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홍보자료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주차장 .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개방 인센티브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및 편의 시설** 등으로 공유하여 주는 정책

□ 사업대상

구분	체육관	주차장	유휴교실 등
대상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단독주택 인접학교로 20면 이상 주차구획 시설	1개 층 이상 규모
공유시간	학교 방과후 및 주말	8:00 ~ 익일 08:00	시설규모에 따라 협의
공유사업	시민 생활체육시설	학교주변 거주자 주차장	평생학습 공간
협약기간	5년 단위	5년 단위	5년 단위
참여규모	체육관, 주차장 및 유휴교실 등: 약 10~15개교		

□ 인센티브 지원방안

구분	사 업 명	인센티브	
행정적	①환경개선사업* 신청시 가점 * 소규모환경개선, 교육협력사업, 공간혁신	가점부여	
재정적	계	2.5억	
	①개방실적* 우수교 지원 *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교실 등 개방실적	100백만원	학교당 2백~5백
	②학교시설* 공유제 참여교 지원 * 체육관, 주차장 및 유희교실 등	150백만원	학교당 1천
		* 공유제 15교 참여기준	

※ 주차시설 개방교 보상금 및 체육관 개방교 시설사용료는 별도

〈참고〉 연간 학교 인센티브 예시(5년간 매년 지급)

항목	주차장 공유시	체육관 공유시	주차장+체육관 동시 공유시
계	20,200천원~22,200천원	16,600천원~18,600천원	33,800천원~35,800천원
인센티브	10,000천원	10,000천원	20,000천원
시설사용료*	-	3,600천원	3,600천원
보상금**	7,200천원	-	7,200천원
개방실적 우수교 지원금	3,000천원~5,000천원	3,000천원~5,000천원	3,000천원~5,000천원

* 시설사용료는 학교별 개방일수 및 개방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 보상금 7,200천원은 주차개방 최소면수(20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개방면수에 따라 보상금은 증가될 수 있음

□ 학교시설 공유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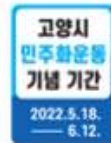
구분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방안
체육관	• 체육관 안전 및 관리상 문제	• (관리·운영)고양시 또는 고양시체육회에서 인력(관리매니저)을 파견하여 관리·운영 • (시설관리)관리매니저가 체육관 시설 일체 관리
주차장	• 주차장 야간시간대 범죄발생 등 안전상 문제	• 범죄예방 시스템인 로고젝터(경찰청 심볼마크 및 경찰서 명칭 사용) 설치 운영 보안뉴스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내 '로고젝터' 범죄 예방 효과 특목 로고젝터는 이미지와 문구를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해 바닥 등에 표출하는 LED 조명장치로, 가로등(보안등)이 점등되는 시간 동안 작동하므로 야간 ... 2020. 7. 7.  • 경찰서와 연계하여 야간시간대 교내를 거점 또는 탄력근무 장소로 지정 · 운영☞학교주변 순찰강화
	• 이용자 출차시간 미준수 및 쓰레기 무단 투척 등	• 이용자 사전교육 시 충분히 주지시키고 출차시간 엄수 등 <u>준수사항 위반시</u>* 자격박탈 등 이용제한 조치 * CCTV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주차시설 관리	• 개방시간 동안 고양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주차시설 관리(관리비용 등은 고양시에서 부담)
공통	• 기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우리청, 고양시, 학교간 협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문제점 등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참고1]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 강좌 신청 공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고양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시설공유제(체육관) 연계 시민생활체육 강좌 신청 안내

1. 고양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학교실내체육관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2022년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생활체육교실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교 인근 시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학교 : 8개교

(항동고, 화정초, 동산초, 백양초, 화수고, 한수중, 정발고, 백석초)

- 모집기간 : 2022.5.11.(수)~5.22(일)

- 신청방법 : 고양시 평생학습포털(<https://www.goyang.go.kr/edu>)

- 강습기간 : 2022.6월~8월

붙임 1. 학교에서 배우는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모집 안내문. 1부.

고양시장

수신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장, 고양시 덕양구 원산동장,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장,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장,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장,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장, 고양시 덕양구 장릉동장,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장,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장,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장,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장,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장,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장,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장,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장,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장,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장,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장,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장, 고양시 덕양구 삼송2동장,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장,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2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1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장,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재무관리과장), 향동고등학교장, 고양화정초등학교장, 고양동산초등학교장, 백양초등학교장, 화수고등학교장, 한수중학교장, 정발고등학교장, 고양백석초등학교장

평생교육정책팀
장

장은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교육문화국장

전결 05/11
최영수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6293 (2022. 5. 11.) 접수 재무관리과-6613 (2022. 5. 11.)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주교동, 고양 / http://www.goyang.go.kr
시청 건우빌딩 1층)

전화 031-8075-2291 / 전송 031-8075-4920 / 950014@korea.kr / 공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2022년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프로그램

학교에서 배우는 시민 생활체육교실 참여자 모집

- ▶ **모집기간** 2022. 5. 11.(수) ~ 2022. 5. 22.(일)
- ▶ **강습기간** 2022. 6월 ~ 8월
- ▶ **신청대상** 고양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 ▶ **신청방법** 고양시 평생학습포털(<https://www.goyang.go.kr/edu>)
- ▶ **수 강 료** 무 료 *선착순 마감
- ▶ **운영강좌**



접수 바로가기

* 운동복, 운동화 필수 착용/ 운동화 밑창 검은색 금지

장 소		종 목	요 일	1반 17:00~18:30	2반 19:30~21:00	관리매니저
1	향동고등학교 체육관 (덕양구 향기3로 6)	농 구	월·수	15명	15명	이 형 석 (010-6436-2685)
		다이어트 교실	화·목	15명	15명	
2	화정초등학교 체육관 (덕양구 화정로 314)	피 클 볼	월·수	15명	15명	조 선 영 (010-5399-4169)
		피 클 볼	화·목	15명	15명	
3	동산초등학교 체육관 (덕양구 동세로 32)	건 강 P T	월·수	15명	15명	김 예 은 (010-5191-0314)
		서킷트레이닝	화·목	15명	15명	
4	백양초등학교 체육관 (덕양구 화신로 238)	배드민턴	월·수	15명	15명	김 호 철 (010-8570-7244)
		농 구	화·목	15명	15명	
5	화수고등학교 체육관 (덕양구 화수로 51)	배드민턴	월·수	15명	15명	김 경 미 (010-9318-7458)
		배드민턴	화·금	15명	15명	
6	백석초등학교 체육관 (일산동구 강촌로 140)	배드민턴	월·수	15명	15명	김 영 숙 (010-5671-2357)
		탁 구	화·목	15명	15명	
7	정발고등학교 체육관 (일산동구 정발산로 185)	배드민턴	월·수	15명	15명	정 완 기 (010-6536-0289)
		농 구	화·목	15명	15명	
8	한수중학교 체육관 (일산서구 주엽로 117)	배드민턴	월·수	15명	15명	주 소 영 (010-8824-8006)
		배 구	화·목	15명	15명	

▶ 배드민턴은 개인 라켓준비 등 종목에 따른 준비물품이 있을 수 있음.

종목 및 준비물품 등 모든사항은 해당 학교 관리매니저에게 문의바랍니다.

(발체)학교시설 공유제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16. 1. 4.] [경기도조례 제7060호, 2021. 7. 14., 일부개정]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삭제 <2012.5.10. 조4373>.

④ 삭제 <2012.5.10. 조4373>

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개정 2013.6.10>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2.5.10. 조4373>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입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⑧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별표] <개정 2013.6.10.>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 에 관한 조례」 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 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 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8.] [경기도교육규칙 제882호, 2020.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①「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 2019. 1. 7.] [경기도조례 제6074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7.>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7.>
3. "지역사회"란 각급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9.1.7.>
4. "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7.>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②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제5조(표창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각급 학교와 지역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7.>

제6조(복합시설 이용 활성화) 학교장은 인근 학교 및 지역주민이 학교 내 복합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제7조(학교시설 사용료 등)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7.>

제8조(협조요청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7.>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